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설치 및 한시 기구 연장 등 국단위 기구·기능 조정 사항과
 - 사업소 명칭변경 등 기능 재배치 사항을 반영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구조정 : : +1실 (1실 7국 2본부 → 2실 7국 2본부)
 - 신 설 : 재난안전실(안 제5조, 제6조의2)
 - 명칭변경 : 안전행정국 → 행정국(안 제7조)
 - 안전관련 총괄 기능을 재난안전실로 이관

- 한시기구 연장 : 혁신도시관리본부 2016. 6.30.까지 1년간
기간 연장,
- 충청북도 조례349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개정

< 局 편제 순서 >

기획관리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방본부

□ 사업소 명칭 변경

- 세종사무소 → 서울본부 (안 제56조의2)

□ 분장사무 조정

- 이관 (안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2조)
 - 지역정보화, 정보통신, 정보보호 업무 : 기획관리실 → 행정국
 - 안전관리 총괄, 민방위, 경보통제업무 등 : 안전행정국 → 재난안전실
 - 자연재난관리, 재해예방·복구, 하천 업무 등 : 균형건설국 → 재난안전실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재난안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설치 및 한시기구 연장 등 국 단위 기구와 기능을 조정하고, 사업소의 명칭변경과 기능 재배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실을 신설하며, 안전관련 총괄 기능을 재난안전실로 이관함에 따라 안전행정국의 명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며,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를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세종사무소를 서울본부로 명칭변경하며,

기획관리실의 지역정보화, 정보통신, 정보보호업무를 행정국으로, 안전행정국의 안전관리 총괄, 민방위, 경보통제업무 등을 재난안전실로, 균형건설국의 자연재난관리, 재해예방·복구, 하천 업무 등을 재난안전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실의 신설에 따라 기구신설 및 명칭변경과 기능이관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보화담당관이 행정국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